|  |  |  |
| --- | --- | --- |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도농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인사부규[2016]5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  국무원 판공청이 전달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의 <도농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잠정방법>(국판발[2009]66호, 이하 <잠정방법>으로 약칭)을 실시한 이래 타성(省) 유동취업 근로자의 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보험가입자의 양로보험 권익을 보장하는 효과가 창출되었다. 단, 실시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과 문제로 인해 일부 보험가입자의 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도농기업 근로자의 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간주보험료납부연수 계산지(地)에 관한 문제. 보험가입자의 보험대우 수령지는 <잠정방법> 제6조와 제12조에 따라 집행한다. 즉,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와 호적 소재지가 일치한 경우 호적 소재지가 대우 수령 수속의 처리를 책임지고;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와 호적 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에서의 누계 보험료납부연수가 10년에 도달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대우 수령 수속을 처리하며;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와 호적 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에서의 누계 보험료납부연수가 10년 미만인 경우 보험료납부연수가 10년에 도달한 직전의 원(原) 보험 가입지로 그 기본양로보험을 이전하여 대우 수령 수속을 처리하고;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와 호적 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각 보험 가입지에서의 누계 보험료납부연수가 모두 10년 미만인 경우 그 기본양로보험과 해당 자금을 호적 소재지로 통합하여 호적 소재지에서 규정에 따라 대우 수령 수속을 처리한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주보험료납부연수는 보험료납부연수에 포함된다.  한 지역(성•자치구•직할시를 단위로 함)에서의 누계 보험료납부연수는 본 지역에서의 실제보헙료납부연수와 본 지역으로 산입된 간주보험료납부연수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 공공기관•사업기관 및 기업에 취직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간주보험료납부연수는 해당 시점의 근무지에서의 간주보험료납부연수에 산입하며; 여러 지역에서의 간주보험료납부연수가 있을 경우 각 지의 간주보험료납부연수를 각각 별도로 계산한다.  2. 보험료 납부 정보에 관한 역사적 문제의 처리. 각 지의 정책 불일치 또는 개인계좌 개설시간의 불일치 등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자가 기본양로보험관계 타성(省) 이전•지속 수속을 처리함에 있어 전출지가 1998년 1월 1일 이전의 월별 보험료 납부 정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전출지가 제공한 1998년 1월 1일 이전의 보험료 납부 정보를 전입지로 이전하여 대우를 계산•지급할 수 없을 경우 전입지는 전출지가 제공한 보험료 납부 시간 기록에 근거하여 기록문서의 기재 내용과 결부시켜 해당 연도를 간주보험료납부연수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임시 기본양로보험료 납부계좌의 관리. 보험가입자가 임시 기본양로보험료 납부계좌 개설지에서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임시 기본양로보험료 납부계좌 개설 전에 납부했어야 하나 납부하지 아니한 양로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임시 기본양로보험료 납부계좌의 성격은 변치 아니하며 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시 임시 기본양로보험료 납부계좌의 규정에 따라 전액 이전한다.  임시 기본양로보험료 납부계좌를 개설하는 기간 중에 보험가입자가 다시 타성(城)에서 유동취업하는 경우 기존 임시 기본양로보험료 납부계좌를 동결하고 대우 수령 조건이 총족된 후 대우 수령지의 사회보험처리기구가 기존 임시 양로보험관계를 통일적으로 통합한다.  4. 일시불 납부 양로보험료의 이전. 타성(省)에서 유동취업한 근로자의 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수속을 처리함에 있어 국가의 규정에 부합되는 일시불 납부 양로보험료가 3년(포함) 분을 초과하는 경우 전출지는 인민법원, 감사부서, 노동보장 감찰 실시 행정부서 또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발행하였고 법률효력이 있는 일시불 납부 기간의 노동관계 존속 사실 증명 문서를 전입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중복적으로 수령한 기본양로보험금의 처리. <잠정방법>이 실시된 후에 기본양로보험금을 중복적으로 수령한 보험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사회보험처리기구와의 협상하에 하나의 양로보험관계를 선택하여 유지시키고 계속해서 대우를 수령하여야 하며 기타 양로보험은 정리하고 개인계좌의 잔고는 본인에게 일시불로 환불한다.  6. 제대군인의 양로보험 이전•지속. 군인의 제대에 따라 기본양로보험관계가 취업배정지로 이전된 후 취업배정지는 그를 위하여 등기수속을 처리하고 양로보험관계를 지속시켜야 하며 제대 양로보험 보조 연수는 취업배정지의 실제보험료납부연수에 산입한다.  제대군인이 타성(省)에서 유동취업하는 경우 전출지는 그의 1998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제대 양로보험 보조를 11%로 계산하여 자금을 전출함과 더불어 개인계좌 기록을 상응 조정하여야 하며 소요자금은 통일계획기금에서 지출한다.  7. 도농기업 단체적 타성(省) 이전 시의 양로보험관계 처리. 도농기업이 단체적으로 타성(省)으로 이전하는 경우 <잠정방법>의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관계를 이전•지속시킨다. 성(省)급 정부의 주도하에 규모이상 기업이 단체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두 성(省)이 협상하여 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을 적절하게 처리한다.  8. 호적 소재지 사회보험처리기구의 통합 책임. 타성(省)에서 유동취업하는 근로자가 호적 소재지에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나 국가의 규정에 따를 때 대우 수령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호적 소재지를 대우 수령지로 하며 호적 소재지의 사회보험처리기구는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등기 수속을 처리함과 더불어 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각 지의 양로보험관계를 호적 소재지로 통합하고 상응하는 양로보험 대우를 지급하여야 한다.  9. 이 통지는 인쇄발부일로부터 집행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국무원 판공청이 전달한 도농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잠정방법의 관철과 실행에 관한통지>(인사부발[2009]187호), <노동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관련 구체적 문제에 관한 의견 인쇄발부 통지>(인사부발[2010]70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의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관련 문제에 관한 공문>(인사청함[2013]250호)의 내용과 이 통지의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 이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가입자가 기존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수속을 밟은 경우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6년 11월 28일 |  | **人力资源社会保障部关于城镇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关系转移接续若干问题的通知**  人社部规〔2016〕5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人力资源社会保障厅（局）：  　　国务院办公厅转发的人力资源社会保障部、财政部《城镇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关系转移接续暂行办法》(国办发〔2009〕66号，以下简称《暂行办法》)实施以来，跨省流动就业人员的养老保险关系转移接续工作总体运行平稳，较好地保障了参保人员的养老保险权益。但在实施过程中，也出现了一些新情况和新问题，导致部分参保人员养老保险关系转移接续存在困难。为进一步做好城镇企业职工养老保险关系转移接续工作，现就有关问题通知如下：  　　一、关于视同缴费年限计算地问题。参保人员待遇领取地按照《暂行办法》第六条和第十二条执行，即，基本养老保险关系在户籍所在地的，由户籍所在地负责办理待遇领取手续；基本养老保险关系不在户籍所在地，而在其基本养老保险关系所在地累计缴费年限满10年的，在该地办理待遇领取手续；基本养老保险关系不在户籍所在地，且在其基本养老保险关系所在地累计缴费年限不满10年的，将其基本养老保险关系转回上一个缴费年限满10年的原参保地办理待遇领取手续；基本养老保险关系不在户籍所在地，且在每个参保地的累计缴费年限均不满10年的，将其基本养老保险关系及相应资金归集到户籍所在地，由户籍所在地按规定办理待遇领取手续。缴费年限，除另有特殊规定外，均包括视同缴费年限。  　　一地（以省、自治区、直辖市为单位）的累计缴费年限包括在本地的实际缴费年限和计算在本地的视同缴费年限。其中，曾经在机关事业单位和企业工作的视同缴费年限，计算为当时工作地的视同缴费年限；在多地有视同缴费年限的，分别计算为各地的视同缴费年限。  二、关于缴费信息历史遗留问题的处理。由于各地政策或建立个人账户时间不一致等客观原因，参保人员在跨省转移接续养老保险关系时，转出地无法按月提供1998年1月1日之前缴费信息或者提供的1998年1月1日之前缴费信息无法在转入地计发待遇的，转入地应根据转出地提供的缴费时间记录，结合档案记载将相应年度计为视同缴费年限。  　　三、关于临时基本养老保险缴费账户的管理。参保人员在建立临时基本养老保险缴费账户地按照社会保险法规定，缴纳建立临时基本养老保险缴费账户前应缴未缴的养老保险费的，其临时基本养老保险缴费账户性质不予改变，转移接续养老保险关系时按照临时基本养老保险缴费账户的规定全额转移。  　　参保人员在建立临时基本养老保险缴费账户期间再次跨省流动就业的，封存原临时基本养老保险缴费账户，待达到待遇领取条件时，由待遇领取地社会保险经办机构统一归集原临时养老保险关系。  　　四、关于一次性缴纳养老保险费的转移。跨省流动就业人员转移接续养老保险关系时，对于符合国家规定一次性缴纳养老保险费超过3年（含）的，转出地应向转入地提供人民法院、审计部门、实施劳动保障监察的行政部门或劳动争议仲裁委员会出具的具有法律效力证明一次性缴费期间存在劳动关系的相应文书。  　　五、关于重复领取基本养老金的处理。《暂行办法》实施之后重复领取基本养老金的参保人员，由本人与社会保险经办机构协商确定保留其中一个养老保险关系并继续领取待遇，其他的养老保险关系应予以清理，个人账户剩余部分一次性退还本人。  　　六、关于退役军人养老保险关系转移接续。军人退役基本养老保险关系转移至安置地后，安置地应为其办理登记手续并接续养老保险关系，退役养老保险补助年限计算为安置地的实际参保缴费年限。  退役军人跨省流动就业的，其在1998年1月1日至2005年12月31日间的退役养老保险补助，转出地应按11%计算转移资金，并相应调整个人账户记录，所需资金从统筹基金中列支。  　　七、关于城镇企业成建制跨省转移养老保险关系的处理。城镇企业成建制跨省转移，按照《暂行办法》的规定转移接续养老保险关系。在省级政府主导下的规模以上企业成建制转移，可根据两省协商，妥善转移接续养老保险关系。  　　八、关于户籍所在地社会保险经办机构归集责任。跨省流动就业人员未在户籍地参保，但按国家规定达到待遇领取条件时待遇领取地为户籍地的，户籍地社会保险经办机构应为参保人员办理登记手续并办理养老保险关系转移接续手续，将各地的养老保险关系归集至户籍地，并核发相应的养老保险待遇。  　　九、本通知从印发之日起执行。人力资源社会保障部《关于贯彻落实国务院办公厅转发城镇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关系转移接续暂行办法的通知》(人社部发〔2009〕187号)、《关于印发城镇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关系转移接续若干具体问题意见的通知》(人社部发〔2010〕70号)、《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关于职工基本养老保险关系转移接续有关问题的函》(人社厅函〔2013〕250号)与本通知不一致的，以本通知为准。参保人员已经按照原有规定办理退休手续的，不再予以调整。  人力资源社会保障部  2016年11月28日 |